

행 정 명 령

뉴욕 고용 우선 사업을 설립하여 장애를 가진 뉴욕커들의 고용을 증가

장애를 가진 뉴욕커들은 주 전체의 인구 중 상당한 비율을 대표하고 있으며 불균형 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노동 연령의 뉴욕커들은 주의 경제에 기여하도록 장려되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경쟁 통합 고용은 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개선된 삶의 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고용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인력에 기여하게 됩니다.

뉴욕은 경쟁 통합 고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장애를 가진 고용 연력의 뉴욕커들에 바람직한 결과를 바랍니다.

뉴욕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경쟁, 통합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A. 정의

여기에서 사용된 대로, 다음의 용어는 다음의 뜻이 적용됩니다:

1. “주 기관 (State agency 또는 agency)”은 모든 주 대행기관, 관공부, 부서, 국,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뜻합니다.

2. "당국"이란 뉴욕주 법률에 따라 새로 만들어졌거나 존재하는 공공 기관 또는 공공 비영리 단체를 뜻하며, 주지사가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뉴욕주 민원실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특정 공공기관 또는 공공 비영리 협회의 자회사를 포함하는 국제 당국 또는 공공 비영리 기관은 제외합니다.
3. "경쟁 통합 고용"은 일을 의미합니다 :
 - a. 경쟁 노동 시장에서 전임 혹은 시간제 근무로 통합 환경에서 수행
 - b. 통상적 임금보다 적지 않으며 혜택의 수준이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며 비장애인들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며 최저 임금 이상 혹은 그 수준으로 보상받는 하는 개인.
4. "통합 설정"은 장애를 가진 각 채용 개인이 장애가 없는 동료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합을 평가할 때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고용 우선 위원회

1. 이 조례는 장애인의 경쟁 통합 고용에 관한 주지사에게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 우선 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2. 위원회 구성으로는 보건을 위한 주지사의 사무 차관; 시민 권리를 위한 주지사의 사무 차관; 인적 서비스를 위한 주지사의 사무 차관; 최고 다양성 책임자; 건강부 국장; 정신 건강부 국장;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국장; 아동 및 가족 서비스 국장; 노동 국장; 경제 개발 국장; 교통 국장; 임시 및 장애 지원 국장; 재향 군인 담당 이사; 노화를 위한 주 사무실 담당 이사;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를 위한 정의 센터 전무 이사를 포함합니다. 기타 위원은 주지사의 재량으로 협의회에 임명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교육 위원과의 협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4. 주지사는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의 회장을 지명합니다.
5.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자신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에서 회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C. 위원회와의 협력

1. 뉴욕주의 각 기관과 당국은 이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 시설의 사용을 포함하여 정보, 지원 및 협력을 위원회에게 제공하며 합니다.
2. 위원회의 업무 이행에 필요한 직원 지원은 주 국 및 청을 통해 공급될 수 있다(그러한 청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

D. 임무와 목적

1.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첫 번째 옵션으로 경쟁력 통합 고용의 이행에 관한 주지사에게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을 만들면서 위원회의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a.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고용 지원 및 서비스를 검토;
 - b. 정책과 장애 및 감소 또는 장벽 또는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고용 장벽 또는 불이익을 만드는 절차를 식별;
 - c. 주의 인력 개발 전략이 민간 부문, 공공 부문과 주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지 보장;
 - d.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교육 환경에서 경쟁 통합 고용으로의 첫 번째 옵션 전환하는 기회를 우선 순위화;
 - e. 장애를 가진 뉴요커의 고용을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의 사용을 확장하고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
2. 이 명령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문단은 장애인의 옹호자,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장애인 주택 및 채용을 담당하는 기관, 교육 기관 및 지역 정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에게 지침과 전문지식을 요청하며 일반인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3. 위원회는 업무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2015년 3월 1일 이전까지 위원회는 권고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주지사에게 제출하며 이 때 위원회는 임무를 다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임무에서 해방됩니다. 그 날짜까지 이사회는 주지사나 주지사의 피지명인이 지시한 대로 이 명령의 목적을 이행함에 있어서 활동, 성과, 권장사항 및 조율에 대해 주지사에게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